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2,905,332	15,387,160
일반회계	466,485,852	13,994,576
특별회계	46,419,480	1,392,584
기타특별회계	46,419,480	1,392,584
상수도 특별회계	15,321,297	459,639
수질개선 특별회계	21,993,364	659,80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1,831	11,7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31,120	30,934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1,499,717	44,992
주차장 특별회계	2,200,740	66,022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3,981,411	119,44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460,05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